

2001고성군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안

(의안번호 제707호)

심사보고서

1. 심사경과

가. 제출일자 및 제출자 : 2001. 8. 20

고 성 군 수

나. 회 부 일 자 : 2001. 8. 21

다. 상 정 · 의 결 일 자 : 2001. 8. 29

총무위원회 상정 · 의결

2. 제안이유

- 식품위생법의 개정(2000.7.13)으로 군에 식품진흥기금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되고 동법 위반으로 군수가 부과 징수한 과징금을 자체 식품진흥기금운용계획서를 만들어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에 효율적으로 사용하고자 함.

3. 주요골자

- 기금조성 : 2,850,000원(2000년 7월 13일 이후)
- 조성방법 :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징수
- 기금의 용도
 - 식품위생에 관한 교육 홍보사업
 - 명예감시원 활동비
 - 위해식품 등 신고보상금
 - 식품위생 및 국민영양에 관한 조사연구 사업

4. 전문위원 검토보고 요지

- 각종 기금운용계획안은 지방자치법 제35조(지방의회 의결사항)와 제118조(예산의 편성 및 의결)의 규정에 의거 당해연도 예산에 편성한 후 지방재정법 제110조(기금의 운용 등)에 근거하여 기금을 운영하도록 법제화 되어 있으나

- 고성군식품진흥기금설치및운용조례를 2001년 4월 20일 조례 제1692호로 제정함으로써 금번 기금운용계획안을 제출하게 되었음.
- 금번 제출된 기금운용계획은 2000년도에 식품위생법 위반으로 영업정지에 갈음한 과징금 285만원을 부정불량식품 및 퇴폐영업방지 간담회 등 5개 항목 등 식품위생에 관한 사업을 효율적으로 추진하기 위한 본 기금운용 계획안은 타당하다고 사료되나
- 본 사용계획이 기금의 용도에 적합한지와 효율적인 운용방안 등에 대하여 충분한 설명을 듣고 심의하여야 할 것이라고 하였음.

5. 질의 및 답변 : 없음

6. 토 론 : 없음

7. 심사결과

- 2001. 8. 29 출석위원 전원 찬성으로 원안가결